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60호
2022년 2월 3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2 5 3 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 소 행 정 과 2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회사무국공고 제 7 호 「남동구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의 회 사 무 국 11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회사무국공고 제 8 호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 의 회 사 무 국 19
수렴
- 의회사무국공고 제 9 호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 회 사 무 국 27
의견수렴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253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제외기준을 구분하고 기준을 변경하여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과도한 무단투기 신고를 제한하고 예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제외기준을 구분하고 제외기준 변경을 통해 과도한 신고 제한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으로 예산의 안정적 운영 도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2.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청소행정과

○ 연 락 처 : 전화 453-2556 FAX 453-2559

4. 참고사항

○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제외기준을 구분하고 기준을 변경하여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과도한 무단투기 신고를 제한하고 예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제외기준을 구분하고 제외기준 변경을 통해 과도한 신고 제한 (안 제9조 및 제10조)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으로 예산의 안정적 운영 도모 (안 제9조)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시흥시 폐기물관리조례」 제26조 및 제27조
-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18조 제1항” 을 “제18조제1항” 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폐기물 (담배꽂초” 를 “폐기물(담배꽂초” 로,
“불법매립 행위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 을 “불법매립 행위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신고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동일인으로 한다)에게 연 30건 이상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포상금을 연 50만 원 이상 지급한 경우

8.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판매소지정) 구청장은 조례 제18조 제1항에 의한 지정 신청을 받을 때에는 주민의 편리와 주위 여건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소지정) ----- 제18조제1항----- ----- ----- -----.
제9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폐기물무단투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10%를 지급하며,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2. (생략) 3. 무단투기 신고자 1명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액은 연 10	제9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 ----- -----. 1. ----- ----- ----- ----- 폐기물 (담배꽂초----- ----- -- 불법매립 행위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 2. (현행과 같음) 3. 신고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

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제3호에 의한 신고포상금중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
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5.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으로 지급함을 원칙
으로 하되, 당해연도 예산 부
족 시 다음 해에 소급하여 지
급한다.

② (생략)

제10조(신고포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포상금의 지급을 제외한다.

1. ~ 6. (생략)

<신설>

<신설>

다.

<삭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신고포상금의 지급제외) -

-----.

1. ~ 6. (현행과 같음)

7.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은 동일인으로 한다)에
게 연 30건 이상 포상금을 지
급하였거나 포상금을 연 50만
원 이상 지급한 경우

8.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이의
를 제기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참고자료]

○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6조(포상금지급)

- ① 법 제68조에 따라 무단투기행위자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시장은 그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별표 12의 신고포상금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무단투기행위의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신고포상금의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12>

1. 투기행위 적발일 현재 시흥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 거주자가 신고한 경우
2. 동일한 신고자(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을 포함한다)에게 분기별 10건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동일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연 100만원 이상 지급된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인이 공무원(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시 생활폐기물 위탁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
5. 신고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6. 피신고사업장, 피신고자에 대하여 위반 당일 공무원 등에 따라 단속된 경우
7. 신고자가 익명이나 차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거나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포상금 지급)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인이 분기(“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은 동일인으로 한다)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연간 포상금 총액이 50만원 초과된 포상금 <개정 2020.5.11.>
2. 동일 사안에 대하여 신고되어 이미 조사 중이거나 처분 중에 있는 경우 또는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개정 2020.5.11.>
3. 익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
4.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이후에 신고한 경우 <신설 2020.5.11.>
5.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군포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0.5.11.>
6. 신고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신설 2020.5.11.>
7. 공무원(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확인된 경우 <신설 2020.5.11.>
8. 동일 사안으로 다른 법률 등에서 포상금이 지급 된 경우 <신설 2020.5.11.>
9.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신설 2020.5.11.>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2-7호

남동구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생리는 모든 여성이 겪는 자연현상이자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여성의 보건위생물품은 생활필수품이자 의료물품으로서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건강한 생리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공공시설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표지 부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보건위생물품 지원 현황 및 인식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안 제5조)
- 보건위생물품 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안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2. 1. 27. ~ 2. 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611
----------	------

발의연월일 : 2022년 1월 26일

발 의 자 : 이선옥 의원

찬 성 자 : 강경숙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생리는 모든 여성이 겪는 자연현상이자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여성의 보건위생물품은 생활필수품이자 의료물품으로서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건강한 생리권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공공시설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표지 부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보건위생물품 지원 현황 및 인식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안 제5조)
- 보건위생물품 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안 제6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
- 「지방자치법」 제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동구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 보건위생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 나. 「남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 라.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시설관리 책임자”란 제2조 제2호 각 목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설관리 책임자는 여성의 건강증진 및 편리를 위하여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설관리 책임자는 여성이 긴급하게 보건위생물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설관리 책임자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정보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지원 사업), 제5조(실태조사), 제6조(교육 및 홍보)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조례안 제4조, 제5조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정하게 되어있으며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 곤란하여 제외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나. 추계결과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88,000천원으로 연평균 37,6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교육 및 홍보,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5조 제1항(실태조사)은 3년마다 실시

작성자 : 주민복지국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참고자료]

□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건강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2-8호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와 예산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3조, 제4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5조
-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2. 1. 28. ~ 2. 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 례 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김윤숙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2년 01월 일
 발 의 자 : 김윤숙 의원
 찬 성 자 : 의원 외 명

☐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와 예산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3조, 안 제4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5조
-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6조

☐ 본 문 : “별 첨”

☐ 신·구조문대비표 : “없 음”

☐ 참고자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남동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범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 참가에 따른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재정지원 등) 의용소방대에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남동구 의용 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의1 및 제4조의2, 제4조의3에 해당하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법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화재 및 구급·구조 보조 등)
 -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 참가에 필요한 비용
 -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이 남동구 의용소방대의 소방기술경연대회 준비 및 참가에 필요한 경비로 남동소방서 및 공단소방서 13개 대대에 대대당 500천원, 연간 총 6,500천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정책기획국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참고자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재난현장 출동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②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장은 화재진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2-9호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남동구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방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구정홍보
 - 민원상담과 주요시책 자문
 - 지역사회 봉사활동
 -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입법 예고 기간 : 2022. 1. 28. ~ 2. 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황규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2년 01월 일
 발 의 자 : 황규진 의원
 찬 성 자 : 의원 외 명

☐ 제안이유

-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남동구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구정홍보
 - 민원상담과 주요시책 자문
 - 지역사회 봉사활동
 -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본 문 : “별 첨”

☐ 신·구조문대비표 : “없 음”

☐ 참고자료

- 「지방행정동우회법」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남동구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육성 및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구정홍보
3. 민원상담과 주요시책 자문
4. 지역사회 봉사활동
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정산보고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동우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3조(보조금의 지원)에서 남동구청장은 남동구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에 따라 비용발생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이 미 영

[참고자료]

□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동우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정관) 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직 공무원 및 동우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행정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동우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우회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제5조(조직 등) ① 동우회는 중앙회, 지회 및 분회를 둔다.

② 동우회의 중앙회와 중앙지회는 서울특별시에, 지회는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치시청·도청·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분회는 시청·군청·구청 소재지에 각각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③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총회) ① 중앙회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지회장 및 분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지회 및 분회의 총회 구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 지회장, 분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은 회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

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회) ① 동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임원) ① 동우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사무총장 1명,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회장은 동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동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감사는 동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제13조(사무 부서) ① 동우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 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우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행정동우회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전에 설립된 시·도행정동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행정동우회의 정관은 이 법에 따른 동우회의 정관으로 본다. 다만, 정관에 이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관을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행정동우회의 회원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행정동우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동우회의 임직원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